

종 별	부 과 기 준	부과 금액 (단위:원)	비 고
외 음식점, 숙박업소, 접객 업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m ² 또는 톤당	5,000원	"
사 업 장 쓰 래 기	다량 배출자	m ² 또는 톤당	7,000원
	다량배출 이외의 자	m ² 또는 톤당	6,000원
건 축 폐 기 물	톤당	6,800원	"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드럼통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m³) 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일반폐기물의 최종 처리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등을 실시하여 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등의 실비를 수집.운반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 12 】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8. 3.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의 시행

주요골자

○ 과태료 처분통지 (안 제4조)

○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5조)

○ 이의제기 (제6조)

○ 강제징수 (제7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 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 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1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법 제7조)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2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2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500미만

적용 법	부 과 향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다양배출자 및 동법 제17조제1항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제외)	500이상 1,0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2.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2항)			
	가. 일반폐기물의 배출시에 시·군·구별로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500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0	50	50
	3.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법 제16조제2항)	300	500	1,000
	4.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중 시·동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사람 (법 제17조제4항)	500	700	1,000
	5.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법 제20조제3항)	1,000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사람 (법 제41조)	300	500	1,000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1.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법 제15조제5항) 가.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1,500	2,000 2,500	3,000 3,000

적용 법	부 과 향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다.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일반목욕장업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2) 특수목욕장업 (사우나탕. 복합목욕탕)	1,000 1,500	2,000 2,500	3,000 3,000
	라.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 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500 1,000	2,500 2,000	3,000 3,000
	마.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바.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화장 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사.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2.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법 제16조제2항)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800	500 900	1,000 1,000

※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양 주 군 수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의무자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금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주 군 수 (인)

210mm x 297mm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액	비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양 주 군 수 (인)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관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양 주 군 수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 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 금액	
	⑥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 13 】 19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년월일 : 1994. 8. 8.

제 출 자 : 양 주 군 수